

##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 The legitimacy and directions of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gainst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 attack under war conditions

Oksun Baek<sup>a,\*</sup>

<sup>a</sup> Research Institute of Law, Chung-ang University,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6, Republic of Korea

### ABSTRACT

The state has the constitutional duty to secure the safety of its citizens and provide protection against any physical danger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high threat of nuclear, biological and or chemical(hereafter referred to as NBC) attack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us, the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form a legislation to provide the protection for its citizens and implement dut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the ‘United Defense Act’,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that are applied under wartime conditions are insufficient in providing the protection of the citizens of the state in the occurrence of NBC attack.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occurrence of NBC Attack’ is legislated to provide a system that protects the nation’s citizens under the wartime conditions mentioned above. This paper incorporat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need for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provide protection for its citizens under wartime conditions, the necessity of a specific measure to protect citizens during NBC attack, the relationship between ‘Act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in the occurrence of Nuclear, Chemical and or Biological Attack’ and current legislations that are applied under wartime conditions, and the particulars of the proposed act.

### KEYWORDS

Nuclear·Biological·Chemical Weapon, Nation Protection, Wartime Disaster Management System,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 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화생방무기  
국민보호  
전시재난관리체계  
국가의 보호의무  
민방위기본법

© 2014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02-820-5449. Fax. 82-02-823-6859  
Email. oksunnybaek@gmail.com

### ARTICLE HISTORY

Received May. 31, 2014  
Revised Jun. 02, 2014  
Accepted Jun. 30, 2014

## 1. 서론

2007년 4월 미 국방부는 화학 및 생물무기 방어계획(CBDP)연례보고서에 근거하여 “한국은 전 세계에서 화학 및 생물 방사능 및 핵무기 공격을 당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이에 대비한 특별한 대책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화생무기 보유, 전쟁 발발 시 대량살상무기의 운용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최고 위험단계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sup>1)</sup> 북한은 세계3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화생방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무기금지기구(CWC), 생물무기사용금지기구(BWC), 핵무기사용금지협약(NPT)에 미가입 혹은 미이행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화생방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는 평시사태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일반적 재난관리법제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고, 아직까지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평시사태에서 국가의 이러한 노력은 안전관리문제로 논의되나, 전시사태에서는 상황의 특수성 상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문제가 된다. 화생방무기 중에서도 화생무기의 경우 제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조가 용이하고,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에 비해 생산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핵무기에 비해 피해면적과 사망률 등 살상효과의 측면에서는 더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된다.<sup>3)</sup> 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화학무기의 독성과 치사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전등 전시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전시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현행법제의 해석과 적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시상황에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와 관련된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전시화생방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전시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제정되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이 논문은 전시에 화생방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며, 향후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법제정의 정당성

### 2.1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를 위한 법제정의 헌법적 정당성

#### 2.1.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전시상황에서의 국민보호에 대한 요청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당연히 국가의 존립으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이고, 권력 독점의 정당성에도 기여한다.<sup>4)</sup> 그러므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sup>5)</sup>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통상 제3자로부터

1) 임종선 외, 『화생방 대피시설 기준 및 활용방안 연구』, 소방방재청 정책연구보고서, 2009, 4면.

2) 홍규덕, “북한화생방무기 위협의 억제와 대응체계 개발”, 『전략연구』 통권 제30호, 2004.3, 45면.

3) 전병을,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대테러연구논총』 제5호, 2008.3, 127면; 문일, “화학 테러리즘의 동향과 대응기술”, 『대테러연구논총』 제6호, 2009.1, 239면.

4) A. Walus, *Katastrophennotstand in Berlin: Strukturen und Kompetenzkonflikte*, LKV 2010, S.152.

5)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es Staates)이론에 대한 연구로는 이승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헌대공법과 개인의 권익보호-규제 양승두교수 화갑기념논문집(I)』, 1994, 1153면 이하;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헌대법학의 재조명-김남진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7, 361면 이하;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수철, “인간의 존엄과 국가의 보호의무”, 『사법행정』 제476호, 2000.8, 24면 이하; 최용기·박현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헌법학연구』 제9권 제1호, 2003, 195면 이하; 표명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론적 기초”,

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 논의된다. 여기서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권보호의무를 원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sup>6)</sup>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굳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할 수 있다. 그 근거는 헌법전문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가 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제2항도 전쟁상황에서의 국민보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헌법」 제5조제2항에서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는 외부로부터의 국가의 존립과 안전, 외부적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그러나 「헌법」상 국가방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국민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과 존립을 보장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가 전쟁상황에서도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가치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국가의 위기관리의 이념적 흐름이 국민방위(civil defence)의 개념에서 국민보호(civil protection)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논의<sup>8)</sup>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전쟁상황에서는 물론 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안전확보 및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로서 국가의 존립근거이기도 하다. 전쟁상황에서 국민은 평시상황에 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전시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2.1.2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를 위한 법제마련의 정당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가 전시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므로, 각 국가의 특성에 부합하게 이를 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시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나 화생방무기를 통한 전쟁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량살상무기인 화생방무기가 개발되고 사용되기 쉬운 현대전은 민간인 사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보호조치가 더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다. 전쟁에 사용되는 각종무기 중에서도 화생방무기의 경우 확산 등 피해를 유발하는 양상이 특수하여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화생방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극소량의 물질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사망·중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기 때문에, 화생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지 못한 국민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화생방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전쟁상황임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국민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화생방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화생방위험이 현실화 되는 전시상황을 가정한 국민보호를 위한 여러 조

『헌법학연구』 제8권제1호, 2002; 명재진,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5권제1호, 2004.2; 박규하, “헌법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입법부작위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19집, 2005.8, 1면 이하; 이부하, “헌법영역에서 기본권보호의무”, 『공법학연구』 제8권제3호, 2007.8, 123면 이하; 서경석,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헌법학연구』 제9권 제3호, 2003.10, 393면 등 참조.

6) 외국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1983년 12월 16일의 결정(BVerfGE 66, 39)과 1987년 10월 29일의 화학 무기결정(77, 170)을 들 수 있다. 전자는 나토가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독일국내에 배치하는 데 대해 연방정부가 동의함으로써 당시 소련이 서독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어 독일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높아졌다는 우려로 인해 연방정부의 동의가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후자는, 미군으로 하여금 독일 국내에 화학무기를 배치하고 이동시키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변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주장이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다수의 견해는, 국가가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와 취한 안전조치가 보호목적실현에 전적으로 부적절하든지 매우 불충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경석,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헌법학연구』 제9권제3호, 2003.10, 397면).

7) 한수용, 『헌법학』, 법문사, 2013, 345면.

8) 윤이·허성윤·문일, “CBRN 재난에 대한 국민보호기능 강화방안 연구”, 『한국위험물학회지』 제1권제2호, 2013.9, 46면; 정지범,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위기관리의 진화 - 영국, 미국, 한 국의 비교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제2집, 2010, 239면 이하.

치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생방전이 발생한 경우 화생방무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가 화생방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와 관련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와 더불어 전시 화생방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전쟁발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방위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외에도 전시상황에서 국민을 보호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도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국민보호법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는 법제에 해당한다.

전시상황에서 화생방 위협이 발생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민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처조직과 대응체계, 경보체계 등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대피지시, 피난명령, 경고등의 강제적인 조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시상황에서 국민을 화생방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를 위한 체계가 입법적으로 정비되는 경우 전시사태에서 화생방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지며, 계획수립단계에서 화생방물자의 비축, 화생방전문병원 등을 설치하는 등을 반영하여 여러 화생방위협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화생방사태 발생시 국민보호를 위해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며, 화생방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의 직접적 법적 근거까지 확보될 수 있어 체계적인 국민보호가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 화생방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할 것이 필요하다.

## 2.2 전시 화생방위협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현행법제 분석

### 2.2.1 전시관련법과 화생방관련법 개관

일반적으로 화생방(化生放)은 화학, 생물, 방사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현행법령상 화생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화생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예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화생방의 개념 혹은 정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예도 없다. 현행법체계상으로는 전시사태 하에서 화생방과 관련된 업무는 안전행정부와 국방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주로 화생방 관련 역량을 갖춘 군 중심으로 법제가 마련되어 있다. 전시사태시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통합방위법」과 「계엄법」이 제정·적용되고, 주민의 보호에 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전시상황에서의 인력·물자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관련되는 체계로 되어 있다.

### 2.2.2 현행법제상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입법적 미비

전시 화생방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인정된다면, 현행법제가 전시 화생방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정비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제상으로도 전시사태에서 충분히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적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입법적으로 전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제정비의 필요성은 없다. 전시상황에 적용되는 법률인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 등 현행 관련법을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다. 「통합방위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통합방위법」은 법률의 목적조항을 고려할 때 통합방위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방위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보호를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보기는 어렵다. 「통합방위법」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 보호규정보다는 통합방위기구, 통합방위사태 선포, 보호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해 적의 침투나 도발, 위협으로부터의 방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통합방위법」상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통제구역설정, 대피명령 등의 규정은 작전과 관련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통합방위법」만으로는 주민보호를 위한 국가의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방부 소속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게 화생방 관련 대국민 방호작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이 있으나, 이 역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행하는 대국민 화생방 방호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군사적 목적상의 한계 때문에 주민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인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분야의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민방위 조직·편성을 정하고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고, 행정기관의 작용법적 근거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은 동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응급조치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이 전부이다. 그러나 현행 「민방위기본법」상의 그러한 근거만으로는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방위기본법」도 전시 화생방사태시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검토에 따르면 현행법제상으로는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국민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 2.2.3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체계상의 문제점

화생방위험과 관련하여 현재 평시에는 군이 주도하는 생화학테러대비 민·관·군 통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평시 화생방 관련 재난관련법제도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전시에는 군이 정부기관을 통제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국민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평시의 화생방 재난관리에 대한 법령은 마련되어 있고, 화생방 테러·재난에 관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전시상태를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위기대응체계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화생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평시에 발생하는 테러사건의 경우 화학분야는 환경부, 생물분야는 보건복지부, 방사능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며, 재난사고관련 주관부서도 테러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별 세월 호사건에서도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화생방분야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현행법제와 정책은 테러와 재난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현재의 법체계상으로는 화생방전 등 전시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군과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유관기관 간의 혼선 발생 및 적시대응관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화생방위험의 발생시 조기경보도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군에서는 화생방 탐지장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는 환자발생시 검역감시체계 가동으로 초기대응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시간 생화학전 감시시스템 및 피해발생시 예측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화생방위험사태 발생시 초기에 경보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시상황에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보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평시관련법상의 다양한 정보 및 경보시스템과의 연계 등도 필요하다.<sup>9)</sup> 이와 같이 시스템 관련사항들은 법률을 통해 경보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관련시스템의 중복운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생화학을 통한 전쟁이 발생시 이를 치료하거나 제독할 수 있는 물자·장비·기술이 부족하고, 여러 시설구축도 미흡한 측면도 문제이다. 화생방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협이 발생한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민간의 대응능력도 부족하므로, 화생방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및 장비·물자비축체계도 마련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화생방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보호를 위해서는 물자·장비의 확보, 민간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여러 교육, 초동대응조직의 구성 및 대응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체계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2.3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 2.3.1 독립법제 제정방안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방안 중 하나는 독립법률의 형태로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법제상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입법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기 위한 방안이다. 독립법을 제정하는 경우의 장점은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독립법에 근거하여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

9) 국가정보원의 테러정보종합시스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상황관리시스템, 안전행정부의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등이 있다.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시 화생방사태의 발생시 필요한 대비·대응에 관한 일련의 작용을 하나의 법률에 근거를 둬으로써 화생방사태로부터 효율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시 화생방사태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시적용 관련법과의 관계 설정, 여러 개별법에 대한 특례조항의 마련 등 국민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은 이미 2004년 6월 18일에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과 법제마련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독립법제인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武力攻撃事態等における國民の保護の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였다.<sup>10)</sup>

그러나 독립적으로 가칭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성격이 문제될 수 있다.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이 법률은 특별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법률로서 「민방위기본법」과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실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의 민방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과 중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차원에서 「민방위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법체계정립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방위기본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시상황 중 화생방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입법논리적 기반이 약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모든 전쟁상황에 국민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화생방위험에 대해서만 국민을 보호하는 법제정 필요성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사항들은 화생방대피시설의 설치와 화생방전문인력의 배치 등 기존의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보다 강한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므로 재원의 확보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 2.3.2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독립해서 제정하는 방안 외에 전시화생방사태 발생시 국민보호를 위한 규율사항을 현행 「민방위기본법」에 포함하여 규율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전시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조치 수행의 주체가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조직이 된다는 점에서 민방위 역할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민방위조직은 「민방위기본법」의 활동주체로 되어 있으나, 실제 군사적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방위요소의 하나라는 점에서 전시상황에서 크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주체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에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면, 민방위 조직에 관한 사항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주민보호활동을 함께 있어 법률의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화생방사태에 국한하여 독립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전시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실질적·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만 보면 「민방위기본법」에 전시 화생방사태시 주민보호를 위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적합할 수 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에는 대피시설 설치등, 화생방물자 비축과 시설·장비의 설치·정비 등, 민방위 조직의 훈련 및 교육, 경보발령,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긴 하나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민방위기본법」상의 규율

10) 동법률은 무력공격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를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법체계에서는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2008년 6월 13일 「무력공격사태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률(武力攻撃事態等における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고 있다. 일본법에서 무력공격이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으로서, 무력공격사태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위험이 긴박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정도에 이른 사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력공격상황에서의 무력공격제해의 범위는 무력공격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 화재, 폭발, 방사성 물질의 방출 그 외의 인적 또는 물적 재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는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재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화생방에 국한하여 국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을 일정부분 준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생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입법과정에서는 제정보다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에 전시화생방분야에 대한 민방위 조직의 활동근거를 추가하여 개정을 하는 경우, 민방위 조직의 활동근거가 화생방분야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부여되는 측면이 지적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독립법 제정문제에서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과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민방위의 개념은 화생방위협사태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데 반해, 화생방사태에 대해서만 민방위를 위한 조직에 대해 별도의 활동근거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방위기본법」의 법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현행 「민방위기본법」의 체계가 장별 편제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에 화생방 분야에 대해 특수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면 장별 편제를 취하는 식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방위기본법」을 전면개정하여야 하고, 법제명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하다.

### 2.3.3 소결

전시에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할 필요성은 화생방 사태 이외에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전시사태에 있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 중 화생방사태는 그 양상이 특수하고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 전시상황 중에서도 특별히 국가의 통일적이고 신속한 국민보호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시상황에서의 화생방위협에 국한하여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추후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전시사태에서의 국민보호 일반을 위한 법제로 변경하는 것도 국가가 입법의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특히나 현행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시사태등에서 민방위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일반사항이므로 화생방 위협시 국민보호조치 일반을 규율하게 되면, 「민방위기본법」의 내용도 현재 법체계에서 많은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이 분야의 법제 개정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보다는 전시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를 위한 법제를 새롭게 독립법으로 구축하는 것이 법의 내용이나 체계상으로는 더 적합하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화생방에 한정하여서라도 전시사태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독립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3. 전시 화생방위협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법률의 규율내용

### 3.1 법률의 제명과 목적

독립법제를 제정하는 경우 그 법률의 제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정하여야 한다.

독립된 법률은 전시사태에서 발생하는 화생방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므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전시화생방사태시 국민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제명으로 될 수 있으나, 법적용상황이 전시라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확보’보다는 ‘국민 보호’가 적합하다. 또한 이 법은 「민방위기본법」과 연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화생방사태의 정의를 함에 있어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사태 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를 기본으로 하고, 모든 전시사태나 통합방위사태가 화생방위협이 발생하는 사태는 아니므로 화생방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도 화생방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화생방사태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정의조항을 통해 전시상황과 관련되므로 법제명에 전시를 포함할 필요는 없고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독립법제의 제명은 법률의 목적과도 연계되는 제명이어야 하므로, 법률의 목적도 현행법체계상 전시상황을 표현하는 용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법적용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화생방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 3.2 제정되는 법률과 타법과의 관계 설정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은 화생방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보호조치 실시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가 전시상황이라는 점에서 군사관련법과 관련되고, 화생방사태의 선포는 「민방위기본법」상 재난사태를 제외한 민방위사태를 전제로 하므로 「민방위기본법」 등 타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 법은 화생방사태시 화생방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적용 하도록 규정한다.

「민방위기본법」도 기본법의 형식으로서 실제 민방위 조직과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방위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닐 뿐만 아니라,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전시에 화생방위협이 발생 혹은 예측되는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므로 이 법은 화생방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민방위기본법」에 대해 특별한 성격을 가지는 법률이 된다.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은 민방위사태에서 화생방위협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민방위기본법」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고, 「민방위기본법」과의 관계를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연계하는 방안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를 때 범목적상으로 본다면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대의 활동등과 관련하여 「통합방위법」에 구속될 수밖에 없으나, 전시 화생방사태시 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은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에 직접적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군사적 활동을 위한 「통합방위법」과 충돌할 여지는 없다. 「통합방위법」은 그 목적자체가 통합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보호에 관한 조항이 몇 개 있으나 이는 국민보호가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므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국민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혹시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에 심각한 방해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국민보호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이므로 법해석상의 문제로서, 「통합방위법」과의 관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일부 조문이 있거나, 실제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보호조치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화생방사태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3.3 제정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은 화생방사태를 대비하고 화생방 사태가 선포된 이후 대응단계에서의 국민의 안전확보 및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피난 및 대피를 위한 조치, 구원 및 대응 등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인 법률의 내용으로 한다. 전시화생방사태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는 전시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재난관리와 유사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이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는 분야인 재난관리(Katastrophenschutz)의 개념을 다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재난관리의 목적을 전시상황에서는 시민보호로 보고, 평시 상황에서는 경찰법상 위협방지로 보고 있기도 한다.<sup>11)</sup> 그러므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은 평시상태에서의 법제를 구성하는 방식인 일반적 재난안전단계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 중 예방과 복구단계를 제외한 대비와 대응에 초점을 맞춰 구성하도록 한다. 재난관리법제의 일반적 체계에서 볼 때, 예방에 해당하는 분야는 평시에 화생방 관련 개별법을 적용하여 대비하도록 하고, 화생방사태 선포가 해제된 이후 여러 복구과정에서의 문제는 국가전체적인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전시상황 종료 후에 대한 복구분야에 관해서는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생방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단계를 위해 조직이나 계획, 구체적인 대응조치등에 초점을 맞추어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시에 화생방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제는 물리적으로는 화생방 방호가 중요하지만, 대피, 피난

11) D. Majer, Neuregelungen im Zivil- und Katastrophenschutzrecht - eine verfassungsrechtliche Bestandsaufnahme, NVwZ 1991, S. 653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일련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시 화생방위협으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위한 기반구축 사항도 법제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 비상대비계획상 화생방전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지침이 미흡하고 주관기관 및 유관부서 계획의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등을 감안하여 비상대비계획에 있는 대응 매뉴얼을 종합 검토하여 화생방전 상황 하에서 대응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정법에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시 화생방사태 발생시 모든 국가조직이 충분한 화생방위협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국가 방위체계 및 재난대응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하며,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시 생화학전 발생시 초기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처 간 업무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무부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12)</sup> 정리하면,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보호를 위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보호 지휘체계 등 관련 조직의 편성과 교육·훈련, 방호시설 설치 및 지정, 물자비축, 경보 발령 및 통보,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위험구역설정, 피난조치 실시, 긴급조치 실시, 국민보호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화생방전문병원의 지정 및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대한 특례 등 전시상황에서 필요한 국민보호시스템을 포함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 4. 결론

국가에게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협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헌법」에 의해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계를 검토한 결과 현행법체계에서는 전시상황에서 화생방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입법을 하고 있지 못하며, 화생방사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쟁상황에서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는 국민보호의무에 따라 전쟁발생시 자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없는 경우 국가가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생방무기를 이용한 전쟁시에는 그 양상이 특수한 까닭에 국가가 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화생방전 위협이 높은 국가에서는 「헌법」에 따른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행방법으로서 전시상황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신속히 국민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소방방재청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화생방 통합 관리주민보호시스템개발’ 과제의 성과입니다.

#### References

- Choi, Y. - K. / Park, H. - J., "The Duty of Guaranteed to Human Rights of the State",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Vol.9. No.1, 2003
- Chung, J.- B., "The Evolution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Administration - A Comparative Study of the UK, US, and Korea",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6. No.2, 2010

12) 화생방 재난과 관련하여 국민보호 기능의 강화방안에 관해서는 윤이·허성윤·문일, "CBRN 재난에 대한 국민보호기능 강화방안 연구", 『한국위험물학회지』 제1권제2호, 2013.9, 50면 이하 참조.

- Han, S. - W., Constitutional Law, [Bobmunsa](#), 2013
- Hong, K. - D., "Threat of North Korea's Chemical, Biological and Toxin Warfare: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Vol.30, 2004
- Lee, B. - H.,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onstitutional sphere",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Vol.8. No.3, 2007
- Majer, D., Neuregelungen im Zivil- und Katastrophenschutzrecht - eine verfassungsrechtliche Bestandsaufnahme, NVwZ 1991, S. 653
- Moon, I., "Trends and Techniques for chemical terrorism",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Vol.6, 2009
- Park, K. - H.,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Legislative Inaction in the constitutional state", Law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Vol.19, 2005
- Pyo, M. - H.,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Vol.8. No.1, 2002
- Seo, G. - S., "Criticism against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Vol.9. No.3, 2003
- Song, K. - C., "The Duty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 Walus, A., Katastrophennotstand in Berlin: Strukturen und Kompetenzkonflikte, LKV 2010, S.152.
- Yoon, Y. /Her, S.-Y./Moon, I., "Study on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Function of Civilian Protection to CBRN Disaster", Korean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Vol.1. No.2, 2013